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적재조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

2021. 9. 3.
사회건설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: 2021년 8월 19일

나. 발의자: 김재진 의원 외 7명

다. 회부일자: 2021년 8월 27일

라. 상정일자: 제232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

사회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(2021. 8. 31.) 상정 의결

2. 제안설명의 요지(제안설명자: 김재진 의원)

가. 제안이유

- 「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」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영등포구 지적재조사위원회의 기능 및 구성 사항을 상위법에 부합하도록 명확하게 규정하고자 함.

나. 주요내용

- 지적재조사위원회의 심의·의결사항 정비(안 제2조)
- 위원회 위원 구성요건을 상위법령에 맞게 정비(안 제3조)
- 공정한 심의·의결을 위하여 위원의 제척 사유 정비(안 제6조)

- 의견청취 등의 대상자에 토지소유자 추가(안 제10조)
- 법제처의 「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」에 따른 조문 정비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(전문위원: 이원배)

- 본 안건은 「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」(시행 '20. 6. 11.)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영등포구 지적재조사위원회의 기능 및 구성 사항을 상위법에 부합하도록 명확하게 규정하고자 제출된 안건임.
- 주요 개정내용은
 - 안 제2조에서는 「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」 개정에 따라 지적재조사위원회의 심의·의결 사항에 “지적공부정리 등의 정지 대상”을 “경계복원측량 또는 지적공부정리의 허용 여부”로 변경하고, “조정금 이의신청에 관한 결정” 사항을 추가하였고,
 - 안 제3조에서는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요건을 상위법령에 부합하도록 정비하였으며,
 - 안 제6조에서는 공정한 심의·의결을 위하여 위원의 제척 사유를 추가 신설하였고,
 - 안 제10조에서는 위원회의 안건 심의 시 의견청취 대상자에 토지소유자를 추가하였으며,
 - 그 밖에 법제처의 「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」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였음.
- 본 개정조례안은
 - 「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」(시행 '20. 6. 11.) 개정에 따라 관련 조문을 상위법에 부합하도록 명확하게 규정하고, 공정한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위원의 제척사유를 추가 신설하고 위원회의 기능 및 운영 사항 등을 정비한 것으로 관계 법령의 범위에서 적정하게 규정되어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됨.

4. 심사결과: 원안 가결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적재조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(김재진 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제 380 호
----------	---------

발의년월일: 2021년 8월 일

발의자: 김재진 의원 외 7명

1. 제안이유

「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」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영등포구 지적재조사위원회의 기능 및 구성 사항을 상위법에 부합하도록 명확하게 규정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지적재조사위원회의 심의·의결사항 정비(안 제2조)
- 나. 위원회 위원 구성요건을 상위법령에 맞게 정비(안 제3조)
- 다. 공정한 심의·의결을 위하여 위원의 제척 사유 정비(안 제6조)
- 라. 의견청취 등의 대상자에 토지소유자 추가(안 제10조)
- 마. 법제처의 「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」에 따른 조문 정비

3. 개정안 : “별첨”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」

나. 예산조치 : 해당없음

다. 입법예고 (2021. 8. 13. ~ 8. 19.): 의견 없음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적재조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적재조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“**따른**”을 “**따라**”로, “**등에 관하여**”를 “**등에**”로, “**정함**”을 “**규정함**”으로 한다.

제2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, 같은 조 제2조제4호를 제5호로 하며, 같은 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1. 법 제12조제2항제3호에 따른 경계복원측량 또는 지적공부정리의 허용 여부

4. 법 제21조의2제2항에 따른 조정금 이의신청에 관한 결정

제3조제1항 중 “**구성한다**”를 “**구성하되,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**”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“**사업지구**”를 “**지적재조사지구**”로 하며,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, 같은 항 제2호 중 “**사업지구**”를 “**지적재조사지구**”로 한다.

1. 소관 업무 담당 국장

제6조제1항제1호 중 “**사람**”을 “**경우**”로 하고, 같은 항 제3호를 제4호로

하며,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3. 위원의 가족(「민법」 제779조에 따른 가족)이 해당 심의·의결 안건과 관련된 지적재조사지구 내에서 분쟁 또는 이해관계에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경우

제8조제2항 중 “제적위원”을 “재적위원”으로 한다.

제9조제1항 중 “담당주사가”를 “담당 팀장이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각호의 업무”를 “각 호의 사무”로 하며, 같은 항 제1호 중 “위원장의 위원회”를 “위원회”로, “보좌”를 “사무”로 하고, 같은 항 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.

2. 심의안건 및 회의록 작성·보존

3.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

제10조 중 “요청하거나”를 “요청하거나 토지소유자,”로 한다.

제11조 단서 중 “당연직(구 소속 공무원)이”를 “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”로, “그러하지 아니하다”를 “지급하지 아니한다”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② (생략)

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. 다만, 제2호의 위원은 해당 사업지구에 관한 안건인 경우에 위원으로 참석할 수 있다.

1. 소관업무 담당국장
2. 해당 사업지구의 동장

3. ~ 5. (생략)

제6조(위원의 제척·기피·회피)

①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심의·의결에서 제척된다.

1. 위원이 해당 심의·의결 안건에 관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

2. (생략)

<신설>

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.

② (현행과 같음)

③ -----

----- 지
적재조사지구-----
-----.

1. 소관 업무 담당 국장
2. --- 지적재조사지구-----

3. ~ 5. (현행과 같음)

제6조(위원의 제척·기피·회피)

① -----

-----.

1. -----

----- 경우

2. (현행과 같음)

3. 위원의 가족(「민법」 제779조에 따른 가족)이 해당 심의·의결 안건과 관련된 지적재조사지구 내에서 분쟁 또는

3. (생략)
 ②·③ (생략)
 제8조(회의) ① (생략)
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제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 ③ (생략)
 제9조(간사)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, 간사는 지적재조사사업 업무 담당주사가 된다.
 ② 간사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처리한다.
 1. 위원장의 위원회 운영에 관한 보좌
 2. 위원회의 업무에 관한 사무 처리
 3. 위원회 회의록 작성 및 보존 등
 제10조(의견청취 등) 위원회는 안건심의와 업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기관에 자료를 요청하거나 이해관

이해관계에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경우
 4. (현행 제3호와 같음)
 ②·③ (현행과 같음)
 제8조(회의) ① (현행과 같음)
 ② ----- 제적위원 -----

 ---.
 ③ (현행과 같음)
 제9조(간사) ① -----

 ----- 담당
담당 팀장이 ---.
 ② ----- 각호의 사무-----

 1. 위원회 -----
 -- 사무
 2. 심의안건 및 회의록 작성 · 보존
 3.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
 제10조(의견청취 등) -----

 ----- 요청하거나 토지소

<p>계인 또는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.</p>	<p><u>유자</u>, ----- -----.</p>
<p>제11조(수당 등) 회의에 참석한 위촉직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필요한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. 다만, <u>당연직(구 소속 공무원)</u>이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<u>그러하지 아니하다</u>.</p>	<p>제11조(수당 등) ----- ----- ----- ----- <u>공무원이</u> <u>그 직무와 관련하여</u> ----- ----- <u>지급하지 아니한다</u>.</p>